

##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신규 수립하고
- 신청사 건립부지 중 자금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 추가 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백만원)

기 금 명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문화체육및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0	68	증 68	신설
청사건립기금	208	3,093	2,885	변경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 11조)
- 사하구 문화체육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제 2조, 제 3조)

#### 4. 검토의견

##### 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 ○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 5. 21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함)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관련기금 운용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것으로

###### ○ 수입부문은

2007. 11. 7 금고업무 취급약정시 부산은행과 우리은행에서 2008년도에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 68,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 ○ 지출부문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과 문화진흥행사 지원에 35,000천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23,000천원,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 연수에 10,000천원을 편성 하였음

###### ○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부문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며, 지출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음.

또한,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볼때 본 사업

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나. 청사건립 기금

### ○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내 부산교통공사 소유토지 16,700㎡중 12,830㎡는 2007. 10. 18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3,870㎡는 자금 부족으로 매입보류 상태에 있어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으로

### ○ 수입 부문은

기존 기금잔액 203,597천원과(이자 포함) 일반회계 전입금 2,890,000천원 등 3,093,59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 지출부문은

신청사 부지 추가 매입에 3,000,000천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93,597천원을 편성 하였음

- 현 청사가 노후·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불 때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2.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4.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